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016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 판 경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01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소10403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전태진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소망

변론 종결2020. 6. 17.

판결 선고2020. 7. 1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소10403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2,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38,6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7,022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광주시 D, E 지상의 철골조 트러스 지붕 1층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연면적 396㎡의 F동(이하 '원고측 창고'라 한다)을 C로부터 임차하였고, G은 원고측 창고 바로 옆에 있는 연면적 347.6㎡의 H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와 G이 사용하는 양측 창고 사이의 경계 부분에는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원고측 창고를 폴리에틸렌

반제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피보험자 G와 사이에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8. 8. 28. 08:58경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주변 다른 공장 건물들이 소훼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역시 차량 뒷면이 열기로 인하여 변형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G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전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658,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계기관의 조사의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갑 제4호증)

○ 화재초기 영상, 화재 진압 시도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의 경계부근에 위치한 원고측 창고 쪽에서 최초 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발화원에 대하여는 논단 불가함

○ 화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국과수 화재감식 결과, 광주소방서 결과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발화원은 판명되지 않으나 발화부에 대해서는 원고측 창고 불상지점으로 추정되며 방화나 실화 혐의점 배제 가능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J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고자 한다.

2) 경기광주경찰서(갑 제5호증)

당시 현장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이 사건 창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에 대해서는 건물 전소, 소훼상태가 심하고 진화 과정에서의 붕괴 및 현장변형으로 인하여 특정되지 않는다.

3) 경기광주소방서(을 제7호증)

○ 발화지점: 원고측 창고 내부로 추정됨

○ 발화원: 화재조사 및 감식 메커니즘 상 구체적인 발화범위 및 발화개소를 한정하기 어렵고,

발화원이 가연물에 발염 착화되는 구체적인 형상 및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음.

○ 화재원인 검토

- 방화 가능성: 배제

외부인의 출입 식별되지 않고, 발화장소인 원고측 창고 중 축소된 발화부위에서 방화로 추정할 만한 물품 및 화원 등 식별되지 않아 배제함

- 전기적 요인: 배제

전기적 열원의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넓은 발화부위로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적 요인 배제함. 다만, 화재현장 증거물 중 배전반 차단기의 내부 단선부와 그 외 증거물의 용단부에서 전기적 특이현상이 확인되어 화재발생 당시 전력이 인가된 상태로 분석된다는 감정기관의 의견이 있으나, 발화부위가 광범위하고 국부적 발화지점이 한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연소진행에 따른 2차 용융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분전반의 차단기가 연소진행에 따른 2차적 단락에 의해 OFF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기계적 요인: 배제

화재가 발생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기계 작동에 의한 과열. 과부하, 오일 및 연료누설, 자동제어 실패, 수동제어 실패, 정비 불량, 노후, 역화, 기타 기계적인 요인 발견되지 않아 배제함

- 가스누출(폭발): 배제

화재가 발생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가스 관련 기기 사용 및 누출, 폭발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치 못하여 배제함

- 인적 부주의 등: 배제

창고 용도로 사용한 건물로 흡연에 의한 담배꽁초, 불장난, 용접.절단. 연마, 불씨. 불꽃. 화원방치, 건물 외부에 쓰레기 소각, 유류 취급, 기타 부주의 요소 발견되지 않아 배제함. 한정된 발화장소 및 축소된 발화부위에서 화기 취급 여부가 식별되지 않으며, 축소된 발화부위 주변 흡연 장소가 있고, 재떨이가 발견되었으나 옥외이고, 당시 우천 관계로 담배 등 미소화원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음

- 자연적, 화학적 요인: 배제

자연적 재해, 돋보기 효과(수렴화재), 가타 자연적인 요인 발견되지 않고, 화학적 폭발, 금수성물질의 물과 접촉, 화학적 발화(유증기 확산), 자연발화, 혼촉발화, 기타 화학적 요인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재 당시, 기온 22.3℃, 상대습도 98%, 남풍, 풍속 2.1m/s, 비가 내린 날씨였으나 화재현장에서 낙뢰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특이점 식별되지 않아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

마. 피고의 구상금 청구의 소의 제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920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8.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는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에게 4,65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18. 11. 28.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변제공탁

한편, 원고는 2018. 1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0400호로 4,738,602원(=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원고 손해액 전액 4,658,200원 + 지연손해금 80,402원1))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불명일 뿐만 아니라, 원고측 창고 내부에는 화재가 발생할 만한 전기기구 등이 없고, 가동 중인 기계도 없었으며 창고에 자체 설비한 소화전도 구비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는 없었다.

(2) 설령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도 많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직원들이 바로 진화를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하고, 피고 차량 차주의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사유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광주소방서, 경기광주경찰서 등에 의하면 원고측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측 창고에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는 등 그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점, 화재방지설비나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측 창고가 불법증축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화재의 확산방지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2) 또한 피고 차량의 손해는 화재로 인한 비산물이 차량 전체에 흩어지고 일부는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리비는 적정하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없다.

4.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이때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며(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함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계자·목격자들의 진술내용과 휴대폰·차량블랙박스 촬영 영상 등을 통하여 식별되는 연소진행상황,

화재현장의 철재건축물의 붕괴형태·샌드위치패널 철판의 소훼상태 및 도괴방향을 통하여 식별되는 연소방향성 감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원고측 창고에서 최초로 발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창고를 포함하여 9개 동의 건축물이 불법증축되어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그 건축물의 형태가 급격한 연소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창고의 경계부위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충전되어 있어 화재 발생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측 창고 건물에는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을 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사실을 초기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 ⑤ 화염이 원고측 창고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상당량의 폴리에틸렌 반제품에 옮겨 붙음으로써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불법 증축된 이 사건 창고를 계속해서 점유하여 온 이상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추인된다. 나아가 불법 증축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원고측 창고에 이연성 물질인 폴리에틸렌 반제품이 대량 적재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분말소화기 외에도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추가적인 화재방지장치를 구비하여 둠이 바람직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방호조치의무의 위반이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원고측 창고의 내부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 구체적인 발화원과 화재 발생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의 많은 직원들이 분말소화기 및 본관동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소방차량의 출동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늦어진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에 불과한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피해 또한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창고의 불법증축으로 인한 건축 형태와 창고 경계에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의 손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주차 위치나 피고 차량 소유자의 피해발생방지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과실상계 또는 피고 차량 수리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한 이익 등과의 손익상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 소유자는 피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하였고, 화재 발생 이후에는 소방관들의 지시에 따라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차량 소유자가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피고차량 수리비에 관한 주장

한편, 원고는 피고차량 후면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차량 전체를 수리하였고, 일부 수리비는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인 G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모두 지급하는 등 피고가 피고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확산 정도, 피고차량의 파손 부위, 수리비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출한 피고차량 수리비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적정한 수리비라고 판단된다.

마. 피고의 구상 범위

피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렇다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책임을 70%로 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은 3,200,740원(= 총 손해액 4,858,200원 × 원고 책임비율 70% - 자기부담금 200,000원)이 된다.

바. 부당이득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0400호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 차량 손해액 4,65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0,402원 합계 4,738,60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책임범위인 3,200,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 55,244원{= (3,200,740원 × 54일 × 5%/365) + (3,200,740원 × 24일 × 15%/365), 원 미만 버림) 합계 3,255,984원(= 3,200,740원 + 55,244원)을 초과하는 1,482,61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1,482,6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신한미

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1) 위 손해액 4,658,20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위 공탁일 2018. 12. 7.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의 책임범위인 3,200,74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위 공탁일 2018. 12. 7.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